

2026.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학생 등의 선거운동 · 정당활동 관련 정치관계법 사례 안내

「 일러두기 」

- 본 정치관계법 사례예시는 학생의 선거운동·정당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 위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니 교육청, 학교, 학생 등 대상 안내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1390번으로 문의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 차

I. 학생(18세)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사례 Q&A	4
① 할 수 있는 사례 관련 Q&A	4
1. 투표할 수 있는 나이	4
2. 선거운동이란?	4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4
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5
5. 말로 하는 선거운동	5
6.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5
7.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5
8.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6
9. 딥페이크영상등의 정의	6
10. 페이스북·유튜브·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7
11.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7
12.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활동	7
13. 투표 인증샷 촬영 ①	7
14. 투표 인증샷 촬영 ②	8
② 할 수 없는 사례 관련 Q&A	8
1.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	8
2.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	8
3.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8
4.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	9
5.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	9
6. 선거운동 노래를 틀어주는 행위	9
7.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①	9
8.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	10
9.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	10
10. 투표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10
11. 정당·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10
12. 투표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10
13.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11
14.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는 행위	11
15.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도 조사	11
16. 딥페이크 음향을 이용한 선거로고송 제작·유포 행위	11
17. 딥페이크 이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12
18. 선거운동용 선거벽보, 현수막 훼손 행위	12

목 차

19.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2
20. 이중투표 금지	2
II. 학생(18세)의 공직선거 입후보와 관련한 사례 Q&A	13
1. 입후보 가능한 선거와 나이	13
2. 예비후보자로 등록 할 수 있는 나이	3
3. 예비후보자 등록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3
4. 입후보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14
5.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14
III. 학생(16~18세)의 당원활동과 관련된 사례 Q&A	15
1. 정당가입 및 당비납부	15
2. 학생의 경선운동 ①	15
3. 학생의 경선운동 ②	16
4. 정당가입 권유시 주의점 ①	16
5. 정당가입 권유시 주의점 ②	16
6. 후원금 기부 방법 안내	16
7.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학생의 경선운동	17
IV. 교원·학교의 활동과 관련된 위반사례 Q&A	18
1.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18
2. 특정 후보자 지지 부탁	18
3. 학생 대상 특정 정당 공약 등 언급	18
4. 후보자 업적 홍보	18
5. 학생 대상 특정 후보자 홍보 부탁	19
6. 특정 후보자의 강연회 등 참석 권유	19
7.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권유	19
8. 특정 정당 지지·반대 행위	19
9. 정당 등 지지도 조사	20
10. 학교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20
11. 특정 후보자 선거공보 등 공유	20
12. 당원 가입·후원금 기부 권유 등	20
13. 투표한 정당 조사	20
V. 정당·후보자의 활동과 관련된 위반사례 Q&A	21
1. 학교 안에 동아리를 만드는 행위	21
2. 학교 내 교실 등 방문	21
3.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①	21
4.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②	21
5.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	21

1. 할 수 있는 사례 관련 Q&A

1. 투표할 수 있는 나이

Q	고등학교 3학년이면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2008년 6월 4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있으나, 2008년 6월 5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선거운동이란?

Q	신문에서 18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궁금합니다.
A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친구에게 000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 이하 '1 할 수 있는 사례 관련 Q&A 10번'까지 동일함.)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000후보자를 시장으로 만들자고 하거나, 또는 000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홍보 인쇄물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행위도 시기나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전화번호: 1390)로 연락하시면 담당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

Q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A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4.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Q	선거운동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선거운동은 법으로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26. 5. 21.(목) ~ 6. 2.(화)입니다.

5. 말로 하는 선거운동

Q	이번 선거에서 000후보자를 지지하는데, 반 친구에게 000후보자를 찍어 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장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6.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Q	000후보자의 교육공약이 학교 현실에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000후보자의 교육공약을 정리해서 이번 선거 때 000후보자를 찍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생각입니다.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선거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한 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받는 사람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Q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로 '000후보자에게 투표해 달라.'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는 금지됨.

8.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Q	<p>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영상등에 대한 규제조치가 도입된 것으로 하는데, 딥페이크 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가능가요?</p>
A	<p>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2026. 3. 5.)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예를 들어, 표시의무를 준수하여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챗GPT, Suno AI 등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딥페이크 이미지 등을 제작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SNS 상 게재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입니다.</p>

9. '딥페이크영상등'의 정의

Q	<p>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2026. 3. 5.) 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하는데, 정확히 딥페이크영상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p>
A	<p>'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함은 1)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2)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3)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뜻합니다.</p> <p>여기서 '인공지능 기술 등'이란 포토샵·그림판과 같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조작을 요하는 프로그램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나, 고급·전문가버전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p> <p>'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이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영상 등의 면면을 진지하게 고찰하거나 딥페이크에 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실제와 구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p> <p>'음향·이미지·영상 등'이란 음향·이미지·영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p>

10. 페이스북·유튜브·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

Q	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OO당이나 O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제가 만든 정당, 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주소 링크를 저희 반 친구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려도 되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1.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Q	OO정당, OOO후보자의 이름과 기호○번이 기재된 키링 또는 배지를 만들어 가방(가방 자체에는 기재된 내용 없음)에 달아서 메고 다니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키링 또는 배지(규격 길이 25cm, 너비 25cm, 높이 25cm 이내, 여러개를 부착한 경우 모두 합하여 규격 범위이내여야 함.)를 가방에 달 수 있습니다.(후보자의 이름, 기호, 선전문구 등이 가방에 인쇄되어 일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방 자체가 규격 범위 이내여야 함.)

12.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활동

Q	설날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삼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삼촌의 선거운동을 돕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학교 밖에서 예비후보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투표해 달라고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3. 투표 인증샷 촬영 ①

Q	인생 첫 투표 기념을 하고 싶은데, 선거권 없는 친구랑 같이 사전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어도 되나요?
A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4. 투표 인증샷 촬영 ②

Q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 인증샷을 촬영하여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퍼나르기)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② 할 수 없는 사례 관련 Q&A

1.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

Q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어느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 이하 '② 할 수 없는 사례 관련 Q&A 17번'까지 동일함.)에게 투표할건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갔는데, 반복해서 물어보니 저도 좀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질문을 안 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친구에게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정중히 거절하도록 합시다.

2.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

Q	평소 000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반도 계속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000후보자를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학교 내 2곳 이상의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Q	000후보자의 교육정책이 맘에 들어 000후보자를 위하여 '교육은 000 후보자에게!' 라는 현수막을 만들어 교문 위에 걸 수 있는지요?
A	질문과 같이 특정 정당, 후보자의 이름, 기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 수 없습니다.

4. 인쇄물을 나눠주는 행위

Q	전부터 OO당 후보자의 대학입시와 관련된 공약을 찬성해 왔습니다. OO당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OO당 후보자의 대학입시공약 홍보책자(OO당과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를 출력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이번 선거에서 OO당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A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이 기재된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포스터를 붙이는 행위

Q	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선거에서 OO당의 후보자들을 위하여 OO당 후보자의 명칭·로고와 선거공약이 기재된 포스터를 만들어 학교 복도에 붙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질문과 같이 특정 정당, 후보자의 명칭·로고와 선거공약이 기재된 포스터를 붙일 수 없습니다.

6. 선거운동 노래를 틀어주는 행위

Q	OO당을 지지하고 있는 18세 학생입니다. OO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OO당 선거유세노래를 다운받아서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틀어놓고 같은 반 친구들에게 OO당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지요?
A	스마트폰으로 선거유세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7.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①

Q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학교 그림 동아리에서 'OO동아리는 이번 선거에서 OOO후보자를 지지합니다.' 또는 'OO동아리 대표(회장) OOO는 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합니다.' 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OO동아리' 또는 'OO동아리 대표(회장) OOO'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8.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

Q	학교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18세 학생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평소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000후보자를 위해 '00동아리는 000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9.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Q	전부터 000후보자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000후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000후보자가 학생들에게 불이익한 공약을 개발해서 공표하였다고 카카오톡을 통해 제 친구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지만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문제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A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10. 투표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Q	같은 반 친구가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대신에 선거에서 000후보자에게 투표해줘.'라고 하는데, 아이템을 받아도 괜찮나요?
A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11. 정당·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Q	후보자에게서 답장을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답장을 보내고 선물을 받아도 되나요?
A	정당, 후보자로부터 카카오톡 선물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12. 투표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Q	제 친구가 투표인증 하면 무료 음료·식사권을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A	투표인증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13.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Q	SNS를 이용하여 "○○후보자가 당선되면 □□ 커피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아마 받게 되실 겁니다. 100명 선착순으로 꼭지주세요."라고 제 지인들에게 보내거나,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을 승낙해도 괜찮나요?
A	정당, 후보자를 위하여 기프티콘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겠다고 승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4. 자원봉사자가 대가를 받는 행위

Q	후보자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부터 좋아하는 후보자라 열심히 활동했는데, 선거사무소장님이 고맙다면서 문화상품권을 주셨습니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A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문화상품권,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15.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지도 조사

Q	제가 사는 곳에 ○○○후보자와 □□□후보자가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어떤 후보자를 더 많이 지지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같은 반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 반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A	질문과 같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후보자 지지도를 알아보는 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16. 딥페이크 음향을 이용한 선거로고송 제작·유포 행위

Q	챗GPT 등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평소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유세노래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교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단순 송출하는 행위는 가능한가요?
A	선거일 전 90일(2026. 3. 5.)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는 할 수 없습니다.

17. 딥페이크 이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Q	□□□후보자의 SNS에 게시된 실제 후보자 사진에 제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한 이미지로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한가요?
A	선거일 전 90일(2026. 3. 5.)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는 할 수 없습니다.

18. 선거운동용 선거벽보, 현수막 훼손 행위

Q	선거벽보나 후보자의 현수막에 장난으로 낙서를 하는 것도 처벌받나요?
A	공직선거법에 의해 첩부된 선거벽보,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처벌(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9.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Q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스타그램에 게시·전송·공유해도 되나요?
A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20. 이중투표 금지

Q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이중투표 할 수도 있나요?
A	누구든지 동일 선거에서 두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II

학생(18세)의 공직선거 입후보와 관련된 사례 Q&A

1. 입후보 가능한 선거와 나이

Q	선거법이 개정되어 고등학생도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입후보 할 수 있는 선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시·도의원, 시·군·자치구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선거의 선거일에 18세가 되는 학생은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로 등록 할 수 있는 나이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할 수 있는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A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18세가 아니더라도 입후보하려는 선거의 선거일에 18세라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은 시·도지사는 2026. 2. 3.,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은 2026. 2. 20., 군의원 및 장은 2026. 3. 22.부터이며,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2026. 5. 14.부터 5. 15.까지입니다.

3. 예비후보자 등록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어떠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의 선거운동방법에 관해서는 입후보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입후보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Q	선거일에 18세가 되는 학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데 입후보시에도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18세 미성년자라도 입후보시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등 관련 절차에 관하여 반드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Q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200만원의 기탁금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모았는데, 선거운동에는 많은 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A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선거(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으며, 각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한도 내의 금액을 모금하여 후원회를 지정한 (예비)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후보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나 1390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학생(16~18세)의 당원활동과 관련된 사례 Q&A

1. 정당가입 및 당비납부

Q	청소년 권익 향상에 힘쓰는 OO정당을 위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A	16세 이상인 학생의 경우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생이 정당에 가입하려는 경우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당활동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안되며, 학교 내에서의 정당활동은 학교관리자(교장)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의 경선운동 ①

Q	OO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OO정당 도지사 선출 경선을 당원투표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합산하여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경선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으며 경선운동시에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지요?
A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하는 경선의 경우 경선운동을 할 때 18세 이상의 학생은 말(言)로 하거나 직접 전화통화 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도 경선운동을 할 수 있으며, 지지하는 경선 후보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지지댓글을 다는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학생은 정당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선에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선운동이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이 아닌,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3. 학생의 경선운동 ②

Q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만16세). 제가 속한 □□정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시장 후보를 당원들만의 투표로 선출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경선운동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A	질문과 같이 당원들만의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등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에서는 16세 이상의 학생도 정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경선운동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경선운동방법에 관하여는 소속정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정당가입 권유시 주의점 ①

Q	OO정당 당원인 고등학생입니다. 소속 정당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친구들을 제가 활동하고 있는 OO정당에 가입시키고 싶은데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는지요?
A	당원가입 권유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당원가입 권유시에는 친구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5. 정당가입 권유시 주의점 ②

Q	OO정당 당원인 고등학생입니다. 친구가 저희 정당 도지사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을 앞두고 자기도 후보자 경선에 참여하고자 OO정당에 가입하고 싶은데 당비를 낼 돈이 없는 상황이라 당원인 제가 정당가입 대가로 대신 당비를 내주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선거를 앞두고 당원이 정당에 납부하여야 할 당비를 대신 납부해주는 행위는 당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6. 후원금 기부 방법 안내

Q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속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위하여 주위 친구들에게 후원회에 기부금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A	주위 친구들에게 말로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문자 메시지로 후원회 계좌,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후원회 기부방법을 안내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학생의 경선운동

Q	OO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18세 학생입니다. 당원과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선의 경우 1)말(言)로 하거나 직접 전화통화, 2)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3)경선 후보자 SNS에 지지 댓글을 다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경선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이때 딥페이크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경선운동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선거일 전 90일(2026. 3. 5.) 전까지 표시의무를 준수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은 가능하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제한됩니다.

IV

교원 · 학교의 활동과 관련된 위반사례 Q&A

1.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Q	교원이 특정 학생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포함. 이하 '㉷ 교원·학교의 활동과 관련된 위반사례 Q&A 10번'까지 동일함.)를 지지(반대)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A	교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금지됩니다. 특히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2. 특정 후보자 지지 부탁

Q	학생에게 수업시간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 000후보자를 찍자고 말씀드려라.'라고 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학생 대상 특정 정당 공약 등 언급

Q	학생에게 '이번 선거에서 00당의 교육공약이 좋으니 00당을 선택해야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한다.'고 말해도 되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후보자 업적 홍보

Q	학생들에게 후보자를 소개하고 정부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등 업적을 홍보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학생 대상 특정 후보자 홍보 부탁

Q	입후보하고자 하는 제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주위 친구들에게도 좋은 사람이라고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도 되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특정 후보자의 강연회 등 참석 권유

Q	동아리 고문을 맡고 있는 교원입니다. 000후보자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동아리 학생들에게 000후보자의 강연회·출판기념회 등 행사일정·개최장소가 있는 일정표를 보내고 000후보자의 공약이 좋은 것이 많으니 주말에 한 번 가서 들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도 되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권유

Q	제 아버지가 선거에 출마하셨는데, 학생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를 돕고 싶은데, 춤이나 노래를 잘 하는 학생들에게 '000후보자는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자원봉사자로 적극 참여해서 공연 등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도 되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특정 정당 지지·반대 행위

Q	00정당은 □□정당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공약을 많이 개발하였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정당의 정책, 공약을 비판하고 반대로 00정책과 공약의 좋은 점을 설명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잘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9. 정당 등 지지도 조사

Q	수업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할 수 있는지요?
A	교원이 학생들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10. 학교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Q	□□학교 교장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OO당 OOO후보자를 초청하여 OO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공약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을 참석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A	학교에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서 위법합니다.

11. 특정 후보자 선거공보 등 공유

Q	제가 담임으로 있는 반의 공지사항을 올리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음)에 OOO후보자의 공약사항, 선거벽보, 선거공보 파일을 올리면서, 다른 반의 학생들에게도 전달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으로서 금지됩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 당원 가입·후원금 기부 권유 등

Q	학생들에게 제가 지지하는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기부방법을 알려줘도 되는지요?
A	교원이 학생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라고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라고 후원금 기부방법을 고지·안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3. 투표한 정당 조사

Q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일인 6월 3일 오후 6시 전에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반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출구조사 명목으로 각자 투표한 정당·후보자를 표시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A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학교 안에 동아리를 만드는 행위

Q	후보자가 학생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하여 학교 안에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는 동아리를 만들게 할 수 있나요?
A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동아리를 만들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2. 학교 내 교실 등 방문

Q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점퍼를 착용하고 교무실 및 각 교실을 순회하며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호소를 할 수 있나요?
A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합니다.

3.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①

Q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교 관리자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출입을 거부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선거운동 ②

Q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학교 운동장에 정차하고 확장장치로 지지·호소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교 관리자가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출입을 거부하거나 자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학생들을 모이게 하고 지지호소 하는 행위

Q	학생들을 강당에 모이게 한 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포함)가 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에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나요?
A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